

광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
제 출 자 : 광 양



1. 제안이유

- 광양시정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는 사실상 지방의회 기능을 대신하여 왔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조례규칙심의회가 설치됨으로써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고,
- 또한 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정책결정을 자문하거나 인재 육성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경우처럼 선정의 공정성, 합리성 등을 검토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부위원장인 부시장이 사실상 위원회를 주관하여 왔음. 따라서 본 위원회 설치운영과 조례규정이 일치되게 위원장직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 운영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,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.(안 제2조제2항)
- 본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.(안 제4조제2항)

3. 개정 조례 안 : “별첨”

4. 관 계 법 령 : 해당없음

5. 관계부서의견 : 의견없음

6. 예 산 사 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사항 : 해당없음

광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시장”을 “부시장”으로 하고, “부시장”을 “총무국장”으로 하며, “사고가 있을 때”를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위원장은 <u>시장</u>, 부위원장은 <u>부</u> <u>시장</u>이 되며, 위원장이 <u>사고가</u> <u>있을 때</u> 부위원장이 위원장, 부 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 직제 순위에 따르는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2조(구성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위원장은 <u>부시장</u>, 부위원장은 <u>총무국장</u>이 되며, 위원장이 <u>부득</u> <u>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</u> <u>없는 때</u>....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회의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위원회는 <u>시장이 필요하다고</u> <u>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</u> <u>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회의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1항의 <u>규정에도 불구하고</u> <u>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</u> <u>에는 위원회를 수시 개최할 수</u> <u>있다.</u></p>